

##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7.(생략)</p> <p>8. F클래스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집합투자기구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7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8. F클래스 수익증권 : 집합투자기구</u>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u>부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